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교육실 운영 지침

제정 2008. 06. 10.
개정 2013. 03. 21.
개정 2017. 11. 01.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07. 01.
개정 2024. 11. 08.
개정 2025. 07.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한의학교육실(이하 "교육실"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육실은 한의학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매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교육 정보의 제공
3.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4. 한의학과 교육과정 및 통합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의학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실장) ① 교육실에 실장 1인을 두며,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은 교육실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의학교육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실장, **한의학과장,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한방병원 병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과정평가 전문위원을 간사로 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실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한의학과 석사과정 통합교과목 운영 및 책임교수
3. 한의학과 석사과정 선택과정 개설사항
4. **<삭제>**
5.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컴퓨터기반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제바탕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상실기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9. 임상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선택실습 및 학생인턴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의학연구과정 및 한의학연구지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생들의 국·내외 교류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전문위원) ① 교육실은 영역별 전문위원을 두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담당 영역은 교육과정 평가, 문제바탕학습(PBL), 임상실기시험, 임상실습, 연구과정, 선택실습, 학생인턴실습 등을 둔다.

1. 교육과정 평가 : 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선행 연구 및 개발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2. 문제바탕학습(PBL) : PBL 과정 및 모듈 개발을 담당한다.
3. 임상실기시험: 임상실습종합평가 과정을 담당한다.
4. 임상실습 :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계획 및 지원을 담당한다.
5. 연구과정 : 한의학연구과정 관련 학생 배정 및 최종 논문과 보고서 등의 심사를 담당한다.
6. 선택실습 : 선택실습의 계획 및 지원을 담당하며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7. 학생인턴실습 : 학생인턴실습의 계획 및 지원을 담당하며 한방병원 병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교육실에는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둘 수 있다.

1. 전임연구원은 교육실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박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수료한 자를 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2. 겸임연구원은 타 대학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보조원은 연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를 실장이 임명한다.

②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신분,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직원) 교육실의 행정 및 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재정) 삭제

제9조(회계) 삭제

제10조(운영세칙) 기타 교육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6.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국제화위원회 규정(제정 2011. 9. 1.)은 폐지된다.

부칙 (2022.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7.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7. 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07. 1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